

신구대조문비교표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파생형)]

변경 전 신탁계약서	변경 후 신탁계약서
<p>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C-I 수익증권</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p> <p>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⑤ 제1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10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p> <p>1. 종류 A 수익증권 2. 종류 C-I 수익증권</p> <p>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p> <p>③ <삭제></p> <p>④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⑤ 제1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11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p> <p>①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좌권, 10좌권, 100좌권,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p>	<p>제11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p>
<p>제12조 (수익증권의 재교부)</p> <p>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 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12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p>
<p>제13조 (수익증권의 양도)</p> <p>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다만, 수익자는 제3조 제3</p>	<p>제13조 (수익증권의 양도)</p> <p>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다만, 수익자는 제3조 제3항의</p>

<p>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그 수익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p>	<p>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그 수익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p> <p>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p>
<p>제14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제14조 (수익자명부)</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p>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이하 "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p> <p>⑧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p>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삭제></p> <p>⑧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p>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p>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5. (생략) 6.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p>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p>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5. (현행과 같음) 6.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

	<p>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p>
<p>제24조 (수익증권의 판매)</p> <p>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p> <p>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p>	<p>제24조 (수익증권의 판매)</p> <p>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p> <p>②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p>
<p>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p> <p>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p>	<p>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p> <p>④ <삭제></p>
<p>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p> <p>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p> <p>1. 합병 · 분할 · 분할합병</p> <p>2.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p> <p>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p>	<p>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p> <p>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선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새로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선정되어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가 있다.</p> <p>③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 또는 배상은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한다.</p> <p>④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p>

<p>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 제4항, 법 제24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법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p>변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2.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p>⑤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 제4항, 법 제24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법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p>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p>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p>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p>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제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별첨 2]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1. 운용전문인력: 남형록 팀장
2.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경력

재 직 기 간	직 장 명	부 서 명	직 위
15년 12월 ~ 현재	이지스자산운용(주)	AP1팀	팀장
11년 5월 ~ 15년 12월	한국투자신탁운용	해외부동산팀	차장
07년 7월 ~ 11년 5월	하나대체자산운용	해외사업실	주임

3. 운용전문인력의 운용 성과

담당기간	투자부동산	역할	규모
2018년 8월~	일본 구마모토현 AEON MALL 매입	투자	JPY 74억엔

2.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제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별첨 2]

투자운용인력의 주요 성과

1. 투자운용인력

재직기간	성명	직위	역할
2010년 ~ 현재	신민재	이사	해외 자산관리 본부장
2015년 ~ 현재	남형록	부장	해외 투자 팀장
2017년 ~ 현재	신소현	차장	해외 운용 팀장

2. 투자운용인력의 주요 성과

투자(관리)부동산	규모	역할	담당
이지스글로벌사모 부동산투자신탁56호	자산총액 : 1,287억	부동산투자	신민재

2018년 7월~	미국 Marriott Courtyard 호텔 포트폴리오 메자닌 대출	투자	USD 80M
2018년 4월~	미국 임대주택 개발펀드(Lennar Multifamily Venture II) 재간접 투자	투자	USD 100M
2018년 3월~	일본 도쿄 임대주택 포트폴리오 3건 매입	투자	JPY 50억엔
2018년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Treasury Tower 매입	투자	USD 32M
2017년 12월~	미국 라스베가스 Cosmopolitan Hotel 메자닌 대출	투자	USD 100M
2017년 11월	미국 맨하탄 1551 Broadway 선순위 대출	투자	USD 105M
2017년 8월	중국 아울렛몰(2건) 매입(공동투자)	투자	USD 70M
2016년 4월~	미국 달라스 KPMG Plaza 선순위 대출	투자	USD 80M
2016년 3월~	미국 뉴욕 787 7 th Avenue 메자닌 대출	투자	USD 220M

*상기 투자 펀드는 기준일 현재 청산되지 않은 관계로 구체적인 운용성과가 실현되지 않음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 부동산투자신탁60호	자산총액 : 2,772억	부동산투자	신민재
이지스글로벌사모 부동산투자신탁56호	자산총액 : 1,287억	부동산 운용	신소현
이지스유럽전문투자형사모 부동산모투자신탁 163호	자산총액 : 534억원	부동산운용	신소현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 부동산투자신탁201호	자산총액 : 328억원	부동산투자	남형록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 부동산투자신탁206호	자산총액 : 960억원	부동산투자	남형록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 부동산투자신탁177호	자산총액 : 743억원	부동산투자	남형록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 부동산투자신탁 176호	자산총액 : 209억원	부동산투자	남형록

* 상기 투자 펀드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의 운용성과만 기재한 것이며 현재 재직중인 직장(이지스자산운용)의 펀드는 청산되지 않은 관계로 구체적인 운용성과가 기재되지 않음.